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3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김현정 · 민병덕 · 민형배

박상혁 • 이기헌 • 이광희

이성윤 · 정성호 · 정준호

주철현 • 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가급적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가족과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 범죄가 증가하고, 친족 간의 범죄라고 해서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이 덜 하 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도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시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 키는 것이 되고, 가족 구성원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 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의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를 "親族間에"로 한다.

제365조제1항 중 "第328條第1項, 第2項의"를 "第328條第2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第328條第1項의"를 "第328條第2項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① 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u><삭 제></u>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			
<u>한다.</u>			
② 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	② 親族間에		
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			
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 前3條	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		
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第328條第1項, 第2項의 身分關	第328條第2項의		
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			
을 準用한다.			
②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	2		
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	第328條第2項의		
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			
輕 또는 免除한다. 但, 身分關	<u>.</u>		
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			
外로 한다.			